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2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노웅래·김진애·양정숙

한준호 · 이병훈 · 김홍걸

인재근・홍성국・박영순

윤미향 • 민홍철 • 윤준병

전혜숙 • 윤재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 비해 16.6%나 증가하였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 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 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 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움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

- 다)은 5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 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람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52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 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 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1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 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 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8조(벌칙) <u>제54조제1항에 따</u> 제 <u>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u>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_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움</u>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u>경우</u>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48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 만을 운전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 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 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 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u>사람</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